● 기획좌담

"기준지킨 농산물 안전" 소비자 인식 중요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9월 1일 부터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보사부에 따르면 쌀·보리·옥수수등 28개 농산물에 17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농산물을 타용도 전환 또는 폐기수거처분만 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월 23일 농민신문사 주최로 농민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참 석 자
(가나다순)

이건충(충남 공주군 정안농협 조합장)
이상석(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장)
이재욱(보건사회부 식품과 사무관)
임 송(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산천1리·농민)
정영호(농약연구소 농약화학과장)
최운홍(농약공업협회 홍보부장)
〈사회=이성모·농민신문사 농정부 차장〉

"지난해 2백70여건의 표본을 검사했으나 단 1건도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없었으며 올해 80여건의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욱 사무관

▲ 사회=먼저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욱=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유해(有害)물질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그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최근 농약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보사부는 88년 9월 13일 28개 농산물에 대해 17개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1년동안 농민을 지도계몽한뒤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홍보기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시기를 2단계로 나눠, 1단계인 89년 9월 1일~90년 8월 31일까지는 위반농산물을 폐기처분하되 생산자는 처벌하지 않고 2단계인 90년 9월 1일부터 위반농산물 폐기처분과 함께 생산자까지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준초과 농산물 없어

▲ 사회=1단계의 시행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이재욱=보사부는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2백 70여건의 표본을 검사했으나 단 1건도 농약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80여건을 검사했는데 역시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 정영호=농민·소비자 모

"
농가에는 바로 유통시키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농산물은 반드시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서 채택해야할 것입니다.
"

정영호 과장

두가 보사부에서 실시하는 조사결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그같은 결과를 바로 발표하여 불안해하는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식품위생법 적용 처벌하게돼

▲ 사회=현재 농민들은 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욱=시도단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소가 관할지역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시로 검사하게되고 중앙단위에서는 유통과정에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을때는 9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제4조나 제7조를 적용, 해당농산물 생산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정영호=보사부에서 검사농산물을 채택할때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농가에는 바로 유통시키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농산물은 반드시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서 채택해야할 것입니다.

▲ 사회=농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고 또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임송=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홍보기간이 농민들 모두가 알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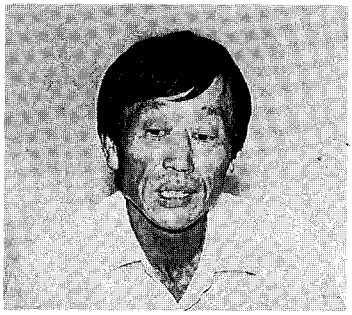

"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면 걱정없다고들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병충해를 충분히 방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임 송(농민)

는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면 걱정없다고들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병충해를 충분히 방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오이·딸기등과 같이 매일 수확하는 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수확3일전까지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문제입니다.

유통商 약품처리 처벌강화를

▲ 이건충=저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농산물에 농약성분이 어느정도 잔류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검사장비도 없다는 점입니다.

또 유통과정에서 상인들이 농약등으로 약품처리 했을 경우 그책임을 생산농민들이 떠맡게 되지 않을까 우려 되기도 합니다.

▲ 최운홍=조합장 께서 지적한 것처럼 중간유통상인들 가운데는 국내에 고시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그책임은 농민과 농약회사에 지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사부는 상인들의 유해물질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석=농민들로 부터 중간상인들이 특정약품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도움말을 주고 있습니다만 농민들도 이제는 옳지못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발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

"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사용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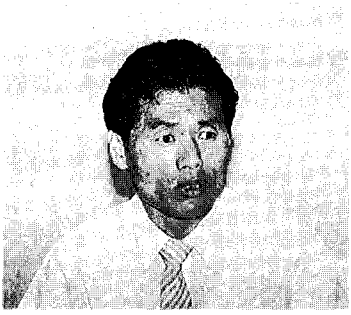

이상석 과장

다.

안전사용기준 철저히 지켜야

▲ **사회**=농민들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석**=최근 소비자 들은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 무공해 농산물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공해농산물 가운데서도 기준치 이하이기는 합니다만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하긴 하되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수확량이 적어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기준을 안지켜 농약잔류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누가 그 농산물을 사먹겠습니까.

또 이제는 소비자들도 우리농산물을 사먹을 것인지, 수입농산물을 사먹을 것인지 그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사용기준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 **이건충**=이제 까지는 농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믿는 풍토가 조성돼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도 기준초과 잔류여부에 대한 시비, 책임소재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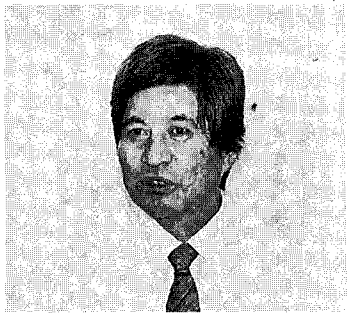

"농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이 제도의 시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충 조합장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홍보와 지도를 꾸준히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인식전환 선행돼야

▲ 사회=잔류농약 검사제 실시에 따른 이점(利點)은 없습니까.

▲ 이재욱=이제 우리 농민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겨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량검사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 이건충=농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이 제도의 시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농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 사회=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인데도 검출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과장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도 자칫하면 뜻하지 않게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 최운홍=동감입니다. 그러

“
잔류허용기준 적용제도는 잘 운용되면 우리농산물 애용과 수입농산물 규제를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운홍 부장

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사부가 검사결과를 신중하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언론매체에서는 잔류허용량 이내인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충격적인 보도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임송=우리 농민들은 콩나물·돼지고기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등의 보도가 나올때마다 가슴을 조이게 됩니다.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쪽은 농민들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도할때는 엉뚱한 피해자를 고려해 진위(眞僞)와 정확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건충=일부 돈많은 사람들이나 식자층(識者層)에서 여론을 잘못 형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이들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생산한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해줬으면합니다.

▲정영호=통상 국민 의식수준과 불안수준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국민의식수준이 올라가면 불안수준도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한단계를 넘어서면 불안수준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의식수준과 함께 불안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언론기관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추측기사를 쓰는 바람에 전체국민들을 불안에 떨

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 사회=끝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이재욱=지난해 검사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없어 매우 다행스러웠습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임송=만(萬)에 하나라도 적발돼, 농민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크리라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홍보및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함께

▲ 최운홍=잔류허용기준 적용제도는 잘 운용되면 우리 농산물 애용과 수입농산물 규제를 위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건충=농민들은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하고, 지도·행정기관에서는 이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가 있어야겠으며, 농약업계는 저독성 농약개발에 주력해야 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약을 무조건 기피하지말고 기준치이하인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 정영호=농약안전사용기준만 잘 지키면 잔류허용 기준에 대해 전혀 걱정없다는 것을 농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석=한 농민이 잘못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 피해는 전체농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사회=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에게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야말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큰 무리없이 잘 시행돼 정착되기를 바랍니다.